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역판정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시〉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50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현승의원 등 12인
2. 제출연월일 : 2024. 10. 23.
3. 회부연월일 : 2024.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으로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현역 입영 대상자, 대체역 등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 대상이 아님에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은 이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7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으로 판정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사람과 ② 국외 왕래 선박의 선원, 국외 거주,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이유로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7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제18조(조직) ① ----- ----- ----- -----.
1. ~ 17의2. (생략)	1. ~ 17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17의3. 「병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
18. (생략)	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경찰·소방·교정공무원, 군인·군무원·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및 그 밖에 학생·심신 장애인·만성 허약자 등을 제외하고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음¹⁾).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된 민방위 자원은 2024년 기준 민방위 대장 83,559명과 민방위 대원 3,201,838명을 더하여 총 3,285,397명에 이르고 있음.

1)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가. 학생
 -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다. 심신 장애인
 - 라. 만성 허약자

[2024년도 민방위 자원 현황]

(단위: 대, 명)

구분	민방위대 ²⁾	민방위 자원 현황		
		계	대장	대원
합계	84,768	3,285,397	83,559	3,201,838
통리대 ³⁾	76,759	2,971,815	75,643	2,896,172
기술대 ⁴⁾	243	17,620	243	17,377
직장대 ⁵⁾	7,766	295,962	7,673	288,289

자료: 행정안전부

- 2)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 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리 민방위대
 2.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
- ② 제1항제1호의 통·리 민방위대는 인근의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하고, 제1항제2호의 직장 민방위대는 같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위 직장 또는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읍·면·동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 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는 지역 민방위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가. 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2. 공공기관 및 업체
 -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 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다.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라.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참고: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구분	법정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시행령 제17조 관련
신분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병역요인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 중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병역법」상 신체검사 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1급에서 3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충역 대상자로서 사회복무요원,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병역대상자로 군 복무 및 예비군 편성이 제외되어 20세부터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 처분하고,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든 병역 의무에서 제외하며, 7급 판정을 받은 자는 재검 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에 따르되 다시 7급을 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함6).

6) 「병역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 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 5. 29.>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병역법」은 국외에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사람 및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연기⁷⁾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4년간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아 재병역판정검사⁸⁾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신체검사 판정(7급)을 받은 사람이나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은 아직 민방위대 편성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민방위대 편성을 위한 자료가 주민등록표 등으로 한정⁹⁾되어 있어 일선 기관에서 민방위대 편성대상 여부를 명확히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민방위대 편성대상자가 아님에도 잘못된 분류로 인해 민방위대 훈련을 받은 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신체검사 대상자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의 편성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

7)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滞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8) 「병역법」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

9)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 ①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실익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①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②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민방위대로 편성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행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하며, 현행법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및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¹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별도로 편성 제외 대상임을 명시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둘째,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비군 제외 대상의 인적사항, 재직증명 및 병역

10)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사항에 관한 정보, 출입국 기록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708호)이 발의되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 경과에 따라 민방위 편성대상 분류 과정에서의 오류가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349